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26. 10. 1.>

○○공소청 ○○지청

(전화번호)

수신

제목 **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 통지**

아래와 같이 범죄피해재산의 환부를 위해 회복대상재산을 보관 중이므로 "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"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번호	년 제 호

1.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공소청:
2. 회복대상재산의 명세 및 가액
 - 금전 외 재산(환가여부:): (가액: 원)
 - 금전: 원
3. 몰수재판 또는 추징재판을 한 법원 등
 - 선고법원:
 - 재판 연월일 및 확정일:
 - 법원 사건번호:
 - 피고인 성명:
 -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범죄사실의 요지 및 죄명 :
4. 청구기간: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

. . .

○○공소청 ○○지청

검사 (인)

유의사항

1. 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복대상재산을 환부받을 수 없습니다.
2. 청구인이 범죄피해재산을 반환받았거나 범죄피해재산에 관해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는 반환받거나 배상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환부받을 수 없습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